

한·미·일 국가원수 위기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한 비교 고찰과 시사점

권혁빈*

〈요 약〉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협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 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국가원수 경호, 요인 경호, 대통령경호실, 비밀경호국, 시큐리티 폴리스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강사

목 차

- | |
|--|
| I. 서 론
II. 미국의 Secret Service (SS)
III. 일본의 시큐리티 폴리스 (SP)
IV.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 (PSS)
V. 한·미·일 3국의 비교
VI. 결 론 |
|--|

I. 서 론

경호의 포괄적 함의는 정부요인과 국내외의 주요 인사 등 피보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려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경찰상 위험방지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경호대상자 중에서도 대통령, 국왕, 수상 등을 포함한 국가수반은 헌법상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이상원, 임준태, 2005: 287; 박준석, 정주섭, 2010: 25). 다시 말하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의 문제는 국가안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가 국제지형을 뒤흔들고 국제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드 황태자 부부의 암살사건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레바논 대통령인 르네 무아와드 신임 대통령의 폭탄 테러에 의한 폭사 참변은 국지간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¹⁾

1) 동아일보 (1989,11,23,) 제1면

르네 무와드 레바논 신임 대통령은 취임 17일만에 정부청사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더욱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을 둘러싼 내란과 더불어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국제 테러리즘의 폭력현상은 특수한 방식의 전쟁형태(special mode of warfare)로 등장하면서 국가요인 테러에 대한 위험요소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동참한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 위협의 증가로 인해 국가요인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의 심적 부담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서상열, 2006:62).²⁾

더욱이 한국은 미국의 9.11 테러 이전부터 북한의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테러리즘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테러 위협에 대한 적극 대응과 동시에 위협요인에 대한 사전예방 분석으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박기주, 2010:127; 장석현, 이대성, 2011; 권정훈, 2010; 서상열, 2006, 이만중, 2010).

시사적인 예로 비추어 볼 때, 최근 미국 Secret Service 국장인 줄리아 퍼거슨 국장의 백악관 침입자에 대한 경호 실패 책임에 의한 사임과 캐나다의 스티븐 허퍼 총리를 노린 암살미수사건, 프란치스코 교황의 철통 경호를 위한 필리핀의 UN평화유지군 동원과 최근 불특정 다수인을 사전 확인 없이 근거리 접근케 한 박근혜 대통령의 허술한 세월호 현장 방문 등을 비교해 보면 각국의 경호 실태에 대한 경각심은 살아 움직이는 국가 안보의 실제임을 반영한다.

엄밀히 말해 국가수반에 대한 경호 시스템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고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현행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각국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체제와 시행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따른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미일 3국의 국가원수 경호체계의 비교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경호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200kg 이상의 강력한 원격조정 폭탄이 터져 대통령을 포함한 경호원 등 23명이 참사하였다.

2) 국제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지난 1944년 이후 한국에 대해 13회에 걸쳐 테러를 계획하는 등 현재 한국도 이러한 테러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상열, 2006:62)

II. 미국의 Secret Service (SS)

미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SS)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과 대규모 경호 인력을 보유하는 SS는 한국의 대통령 경호실 및 일본의 시큐리티 폴리스(SP) 창설에 직·간접적인 모델이 된 바 있다.(임준태, 2009: 266; 박준석, 정주섭, 2010).³⁾ 본래 위조지폐 적발을 위한 수사 기관으로 출발한 SS는 아직까지도 요인경호(protection)과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의 보호라는 이원화된 임무(dual mission)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 SS의 모토는 “신뢰와 확신을 받을 수 있도록”(worthy of trust and confidence)이다. (Emmett, 2014: 3)

1. SS의 역사

SS는 대통령 암살 등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며 발전해 온 바 있다. SS는 1865년 7월 5일 미국 최초의 연방수사기관으로서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에 창설되었다. 그 주된 창설 목적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만연된 위조지폐의 대량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⁵⁾

당시 대통령의 경호는 Washington DC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1865년 4월 14일 Abraham Lincoln 대통령 암살에 이어 1881년 9월 19일 James A. Garfield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미 의회에서는 대통령 경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의 경호기관을 창설할 경우 민주주의에 반하여 대통령의 사병화(私兵化)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장기봉, 2001)

1867년 SS는 미합중국 내 위조지폐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였다. 의회는 SS에 대정

3) SS는 2013년 4,160개소의 방문지 국내 요인을 수행하고 1,168명의 방미 해외 정상의 경호를 담당한 바 있다.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2014). U.S. Secret Service 2013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4) <http://www.secretservice.gov/mission.shtml> (2014년 7월 15일 검색)

5) SS는 2013년 전세계에서 합계 약 1억5천6백만 달러 상당의 달러화 위조지폐를 수거한 바 있다.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2014). U.S. Secret Service 2013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 당시 미국내 유통 지폐의 1/3이 위조지폐였다고 한다. Lincoln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 암살 전 마지막으로 추진한 법안은 SS의 설립 법안이었다. (Kessler, 2010)

부 사기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1901년 9월 6일 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또다시 암살됨에 따라 1902년 의회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SS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SS의 권한과 임무는 계속 확대되었다. 1913년에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호 권한이, 1917년에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1922년에는 오늘날 US Secret Service Uniformed Division의 전신인 The White House Police Force가 설치되었다.

1961년에는 SS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리적 기간동안 경호하는 것을 의회가 승인했다.

1963년 11월 22일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 사건 발생 이후 SS의 편제를 재무부 산하의 課단위에서 局단위의 외청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대통령 경호요원을 대폭 확충하며 교육기관을 창설하여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 역시 SS가 담당하게 되었다.

1971년에는 국민경호과가 신설되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수반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Presidential Threat Protection Act가 통과됨으로써 국가의 특별한 중요 행사에서 SS가 경호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신설됨에 따라 SS는 재무부 산하에서 국토안보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2. SS의 조직

SS는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연방법 집행기구(Federal Law Enforcement)로서 美전역에 50개 지부와 11개의 연락사무소 그리고 전세계에 24여개의 해외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4월 현재 SS에는 연간 약 16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으며, 약 7,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⁷⁾ 여기에는 3,200여명의 특수 경호요원(special agent), 1,300여명의 정복 경호요원(uniformed division officers), 2,000여명의 행정·사무직 직원들을 포함한다.⁸⁾

7) <http://www.secretservice.gov/depdirector.shtml> (2014년 7월 15일 검색)

그리고 S.S에는 차관보급의 실장(Director)과 차장(Deputy Director)이 있으며 8개 부서(Office)의 참모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와 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Office of Administration (행정처)는 경리·조달·관리·행정 등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둘째, Office of Government and Public Affairs(정부기관 및 대외업무 연락처)는 연방수사기관, 국회 등 공공기관 연락관 운용 및 대언론장구의 역할을 한다.

셋째,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Training(인사처)은 채용·교육훈련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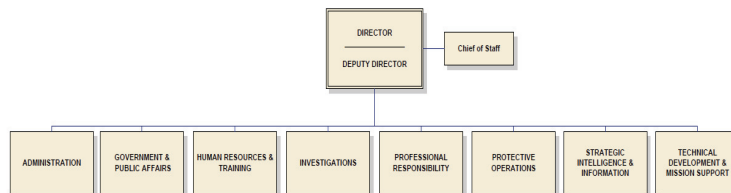
넷째, Office of Investigation (수사처)는 경호위해사범 수사, 위폐수사, 수표 및 신용 카드 위변조 사범 수사,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 Field Office (지부) 관장을 담당한다.

다섯째,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감찰실)은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직원비리 조사를 담당한다.

여섯째, Office of Protective Operation (경호처)는 근접경호업무 수행, 경호작전과 관련 경호유관기관 협조 및 지휘를 담당하며 정복경비부, 경호부, 후보자 및 당선자 경호부, 요인 경호부로 나뉜다.

일곱째, Office of Strategic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전략정보처)는 경호·수사 정보 수집 및 전파, 검측·화생방 탐지 및 행사 안전업무, 신원정보 자료준안을 담당한다.

여덟째, Office of Technical Development and Mission Support(임무지원 및 기술발전 처)는 임무지원, 경호 및 수사체제 연구, 경호·수사장비 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그림 1〉 SS의 조직구조

<https://www.dhs.gov/xlibrary/assets/org-chart-usss.pdf> (2014년 7월 28일 검색)

8)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 (2014년 7월 15일 검색)

3. SS의 운영

1) 경호대상 및 법적 근거

SS의 권한과 임무를 규율하는 법령은 U.S Code 18, Sec. 3056 "Powers, authorities, and duties of United States Secret Service"이다. 그 중 경호업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United States Secret Service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① 대통령, 부통령 및 대통령 부통령 당선자
 - ② ①항의 직계가족
 - ③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 (퇴직후 10년)
 - ④ 전직 대통령 자녀中 16세 미만자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16세 미만자)
 - ⑤ 미국을 방문중인 외국의 정부수반
 - ⑥ 기타 미국을 방문중인 주요인사 및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공식 대표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者
 - ⑦ 대통령 선거일 기준 120일 동안의 주요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

그리고 동법령 (C) 항에는 SS요원들의 영장집행과 총기 휴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D) 항에는 경호업무를 포함하는 SS요원들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방해 및 물리적인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 1,000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을 모범으로 하여 국가기관의 대통령 경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범위와 절차를 규율하는 Public Law 94- 524, Presidential Protective Assistance Act를 1976년 제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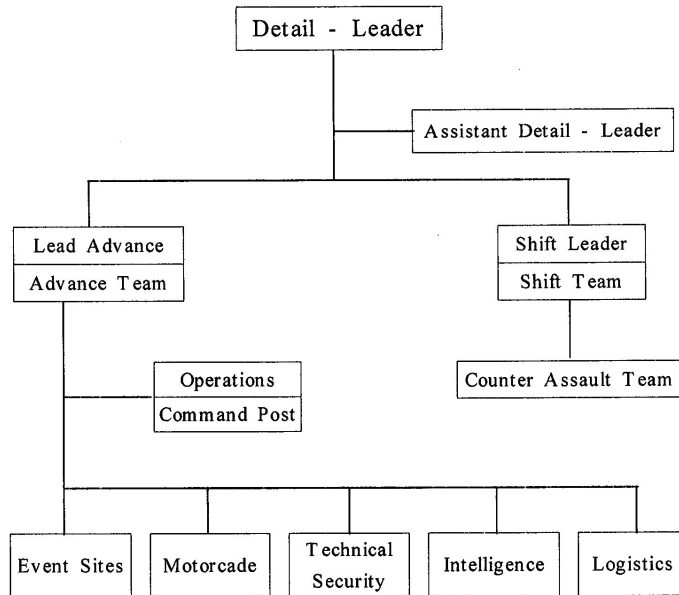
2) 경호작전체계

SS의 경호대상은 대통령, 부통령 등의 permanent protectee와 단기간의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정·부통령 후보자, 외국국가 수반 등 temporary protectee로 구분되어 경호를 담당하게 될 단위조직이 구성된다. 경호처 예하에 경호를 담당하는 단위조직으로서 permanent protectee를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경호과⁹⁾와 부통령 경호과를完편하

여 두고 있으며, temporary protectee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경호과, 대통령후보 경호과 등은 평시 소수인원으로 감소 편성하여 운영하다가 임무 부여시 태스크 포스 개념으로 전환되어 운영된다. 각각의 피경호인에 대하여 Detail Leader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호책임자를 임명하는데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경호과장이 당연직으로 Detail Leader가 된다(장기봉, 2001:32).

美대통령의 실제 행사시 S.S의 경호작전체계를 살펴보면 Detail Leader인 백악관 경호대장은 PPD 소속의 요원 중에서 사전예방 경호활동을 책임지게 될 Lead Advance를 선임하고 Lead Advance는 경호작전에 필수요소인 <그림 2>의 내용과 같은 작전요소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태스크 포스인 Advance Team을 편성한다. Advance Team은 피경호인이 방문하게 될 행사지역을 정밀답사하여 지역실정과 행사성격 및 경호환경에 부합하는 작전요소별 적정 경호인력을 산출하며 필요장비의 동원, 최기병원 및 비상대피로의 선정,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방재 및 구급 구조 계획수립 등 세부계획을 수립 지휘계통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Advance Team은 軍, 연방기구, 지역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사항을 요청하며 국가통신망이 가설된 Command Post를 설치하고 그들과 합동근무를 하게 된다(박준석, 정주섭, 2010:223).

9) 대통령경호과(PPD : Presidential Protective Division)는 SS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서 일명 백악관 경호대라고 불리워진다. 경호부장 즉 백악관 경호대장은 정복과 (Uniformed Division)를 작전지휘하며, 대통령경호와 관련하여 경호인력의 동원, 장비구성 등 모든 경호작전요소를 지휘한다.



- | | |
|-----------------------------------|---------------------------|
| ※ Detail Leader : 경호책임자 | Operations : 작전담당관 |
| Assistant Detail Leader : 경호 부책임자 | Command Post : 작전지휘소 |
| Shift Leader : 수행경호팀장 | Event sites : 행사담당관 |
| shift Team : 수행경호팀 | Motorcade : 차량운용팀장 |
| Counter Assault Team : 강습대비팀 | Technical Security : 검측팀장 |
| Lead Advance : 선발경호팀장 | Intelligence : 정보팀장 |
| Advance Team : 선발경호팀 | Logistics : 군수지원팀장 |

〈그림 2〉 SS의 경호작전체계도

* 출처: 장기봉(2001: 34)

3) 지원기관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는 미국의 대통령경호 및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 편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작전요소를 제공한다. 국방부는 대통령 및 각료들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군사지원단(Washington Headquarters Service; WHS)을 편성하고 군사지원단은 대통령에 대한 24시간 군사지원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고위

장교를 백악관 연락장교로 파견하여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SS실장의 통제를 받는다.¹⁰⁾

그 외 경호작용을 위하여 SS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여러 경호유관기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미국의 경호유관기관 현황

소속	기관명	관련업무
대통령 직속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국제 테러조직 및 적성국 정·첩보 수집, 분석, 전파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국가테러 예방 수사 및 수습 • 조직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 • 신원조사 Database 구축
	INS (Immigration Naturalization Service)	• 해외 불순인물 잠입 예방 • 불순용의자 출입국 파악 및 정보제공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 국내 외 마약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위태동향 분석
	AIF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 대규모 행사시 경호인력 지원 • 불법무기 단속 및 위태첩보 제공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 대규모 행사시 경호인력 지원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대규모 행사시 경호인력 지원 • 공·항만 위험물 출입관리
	Coast Guard	• 해상경비, 테러 방지 및 수습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항공기 납치 방지 •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전파 • 비행금지구역 설정 (VIP 행사지역)

10) 국방부 작전명령 Department of Defence Directive No. 305, 13의 Employment of Department of Defence Resources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제3항은 미 합중국 대통령, 부통령의 경호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력, 통신, 항공, 검측, 의료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S.S의요청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軍인력은 임 무 수행중 S.S 실장 혹은 실장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장기봉, 2001: 35).

소속	기관명	관련업무
우정국 (US Postal Service)	Postal Service	• 우편물 테러 방지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Park Police	• 국립공원 치안유지 • 백악관 앞 Lafayette 공원 관할 - 경호인력 지원 - 공원내시위자 통제
주, 군, 시 (State, County, City)	Police	• 경호인력 지원 • 관할지역 범죄조직 감시 및 정보 제공

* 출처: 장기봉(2001:37)에서 재구성

4) 교육훈련¹¹⁾

신규 임용된 특수 경호요원(Special Agent) 연수생들은 처음으로 Georgia주 Glynco에 위치한 연방 법집행 훈련센터(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FLETC)에서 10주간의 범죄수사관 훈련 프로그램(Criminal Investigator Training Program; CITP)을 교육받게 된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형법, 취조기술과 같은 이후 받을 각각의 직무교육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CITP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특수요원 연수생들은 다음으로 Maryland주 Beltsville에 위치한 James J. Rowley Training Center(RTC)에서 17주간의 특수요원 교육을 받게 된다.¹²⁾ 이 과정은 수사와 보호라는 이원적 책임과 관련된 SS의 정책 및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위조수사, 사기와 같은 재정적 범죄행위 및 정보수사, 물리적 경호기술, 응용경호, 응급처치에 대해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응용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핵심은 사격술, 통제전술, 수중생존기술 및 신체 단련 등의 광범위한 훈련과 함께 진행된다.

SS 요원들은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응용훈련을 받는다. 이 훈련은 화기조작 및 응급처치에 대한 재교육을 포함한다. 경호 임무를 맡은 요원들은 실제상황과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통해 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이 훈련은 다양한 비상상황 시나리오를 통해 경호요원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11) <http://www.secretservice.gov/faq.shtml> (2014년 7월 15일 검색)

12) 2013년 RTC는 413개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2,709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다.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2014), U.S. Secret Service 2013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직무에 배치된 요원들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응용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 집행기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경호요원들은 다양한 관리기법과 자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훈련에 참여한다. 이는 윤리성, 다양성, 대인관계, 실질적 리더십, 관리 감독에 대한 소개 등을 포함한다.

제복 경호요원(uniformed agent)는 FLETC에서 12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후 RTC에서 13주간의 전문적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트레이닝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경찰직무절차, 화기, 체력, 심리학, 경찰지역 사회관계, 형법, 응급처치, 체포, 수색과 압류, 물리적 방어기법, 외교면책특권, 국제조약 및 방법 등이 포함된다. 현장훈련과 응용 직무간 훈련이 이와 함께 진행된다.

Ⅲ. 일본의 시큐리티 폴리스(SP)

일본의 경찰체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자치경찰인 도·도·부·현 경찰로 이루어진 이원체제로 운영된다. 도쿄도를 관할로 하는 경시청과 자치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은 자율적인 운영체계이지만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시큐리티 폴리스(Security Police; SP)란 일본의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요인경호임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가리키는 칭호이다. 경시청 이외의 도·도·부·현 경찰 경비부 경비과 혹은 형사부에 속하는, 요인경호를 행하는 경찰관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그들은 정확히는 경비대원, 신변경계원 등으로 불려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의 과원(SP)와는 구별된다.

1. SP의 역사

1975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수상 국민장례식장에서 미키 타케오(三木武夫)수상이 우익단체인 대일본애국당의 당원에게 구타당해 부상당한(미키 수상 구타 사건)을 계기로 창설되었다.¹³⁾ 당시의 경호는 요인의 전면에 나오는 일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실시되고 있었으나 경시청은 경호의 방식을 재검토했다.

1974년 제럴드 포드(Gerald Ford) 미국 대통령이 내일했을 때 SS(secret service)의

13) http://r25.yahoo.co.jp/fushigi/rxr_detail/?id=20071025-90002848-r25

합리적이고 눈에 띄는 경호방식이 경시청 경비간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SP는 SS를 참고로 훈련되었다. 약칭 SP는 시크릿 서비스의 약칭 SS를 본뜬 것이다. 본래 영어로 secret police는 공안경찰을 의미한다.

2. SP의 조직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 경호관리계 (서무담당)
- 경호제1계 (내각총리대신 담당)
- 경호제2계 (국무대신 담당)
- 경호제3계 (외국요인, 기동경찰담당)
- 경호제4계 (토쿄도지사, 정당요인 담당)
- 총리대신관저 경비대 (총리대신관저의 시설경비를 행하는 부대로 신변경호는 행하지 않으므로 SP가 아님)

부대는 근접보호부대와 선착경호부대 등 2종류의 임무부대가 있으며, 양 부대는 공안경찰과 소관경찰서와의 긴밀한 연대 아래 경호를 행한다. 근접보호부대는 상시 경호대상자의 신변에서 경호를 행하는 부대이며, 일반적으로 SP라 칭하는 것은 이 부대의 대원을 말한다. 선착경호부대(SAP)는 “어드밴스”라 불리는 선착경호를 담당하는 부대이다. “어드밴스”란 공안경찰의 경찰관과 함께 경호대상자의 행선지와 현지 경찰에 대해 경호 협력을 구하기 위한 교섭을 행하며, 불심자 및 불심물의 유무를 검색함으로써 사건의 예방을 행하기 위한 임무이다.¹⁴⁾

SP·SAP 양부대의 구성원 일부에는 불측 사태 발생시 현장에 남아서 범인과 최후까지 교전하는 임무를 맡은 SP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때 경호대상자는 다른 SP의 호위를 받아 신속히 퇴피한다.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협도 등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서는 어드밴스는 행해지지 않거나 또는 간략화된다. SP는 법률등에 정해진 경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신변경호를 행하고, 현지의 도부현 경찰은 SP의 경호활동의 지원을 행한다.

14) <http://www.laqoo.net/keisatu/security.html>

3. SP의 운용

1) 경호대상자

일본에서는 경찰관에 의한 경호대상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요인이라고 불리는 인원 전체를 경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호대상자는 아래와 같다.¹⁵⁾

(1) 내각총리대신

(2) 국민

(3) 그 외 경찰청 장관이 정하는 자

- 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 ② 최고재판소 장관
- ③ 국무대신
- ④ 국민, 공식실무방문빈객
- ⑤ 그 외 경찰청경비국장이 정하는 자(전 총리, 정당대표자, 재일대사 등)

내각총리대신, 중의원의장, 참의원의장, 국민 등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경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요청과 관계없이 경호한다. 미국의 SS는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해서 경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내각총리대신의 가족은 경호대상자가 아니며 SP는 총리대신을 경호하더라도 그 가족까지는 경호하지 않는다.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중의원 부의장, 참의원 부의장, 국무대신, 전 총리대신인 중의원의원은 요청출동에 의한 경호의 대상자이다.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총무회장, 참의원의원회장, 참의원간사장, 선거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에 의석을 두는 정당의 대표자에 대해서 필요에 응하여 경비를 행한다. 이들은 '요청출근'이라 불리는 경호로서 요청이 없으면 경호하지 않는다. 주요정당의 대표자는 국정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경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공산당만은 당원유지로부터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주경비를 하고 있으나,

15) 警察法 警察法施行令 警護要則 警護細則 (昭和二十九年政令第五百一十一号) 第2條

과거에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사건과 중핵자위대사건 및 일본공산당 스파이심문사건 등 역사적 경위에 의해, 아직까지公安조사청과 公安경찰 (경시청 公安부, 도부현 경찰경비부 公安과)로부터 ‘파방법에 기초를 둔 조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불복되어, 경찰관으로부터의 요청출근의 타진을 거절해 오고 있다. (같은 경비부에서도 경비경찰은 공산당원의 보호를 담당하나, 公安경찰은 공산당을 감시대상으로서 적시하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경호대상자 이외에 도쿄 도지사에게는 도 조례에 의해 SP가 경호를 담당한다. 또한 오사카 부지사는 부 조례에 의해 (2008년 2월부터) SP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경비대원(경호원)이라 불리는 경찰관으로부터의 경호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도쿄 도의, 오사카 부경찰은 오사카 부의 기관이다.)

주일대사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스라엘, 미국 등 분쟁국가, 국제정치 중 미묘한 외교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의 대사에게는 대사관 관계자가 고용하고 있는 보디가드에 더하여 SP와 公安경찰에 의한 경호가 붙는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현역회장이 SP에 의한 경호를 받은바 있다. 경단련회장에게 SP가 붙은 기간은 노무라 슈스케(野村秋介)가 이끄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파의 우익단체에 의한 경단련습격사건이 일어난 1977년부터 2010년까지의 33년간이었다. 현재 민간인으로서 SP에 의한 경호를 받는 자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주요정당의 대표자 또는 각료가 아닌 자)에게도 SP가 붙는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SP가 국회의원의 경호를 담당하는 일은 없으며 각 국회의원은 경비회사의 보디가드에 개별적으로 의뢰하고 있다. 단지 그 발언과 정책 등으로 폭력단과 우익단체, 과격파 등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을 위험이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해당 의원측 혹은 경찰당국에서의 요청으로 경호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SP가 신변경호를 행하는 대상인물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기초를 둔 비상적으로 제한된 범위이므로 비록 거물 정치가와 고급관료 등 요인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는 한 SP가 경호하는 일은 없다. 그들의 신변경호는 지지자와 경비회사의 보디가드에 의해 행해진다.

2) 직무내용

국회에 의석을 갖는 일본공산당 이외의 각 정당의 대표자, 각국에서 내일하는 요인 등,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호대상자가 자택을 나와서 귀가할 때까지의 신변 경호가 전문직무이며, 범죄수사, 지역경계, 교통단속 등은 그 직무 외이다. 또한 경호대상자 자택의 경비는 기동대와 공안경찰의 담당이며 자택의 주변은 유격경계차와 사복패트롤가 등에 의해 경비된다. SP는 비상사태에는 온몸으로 경호대상자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그 고도의 직무내용으로 인해 각 부서에서의 선발자로 구성된다. 또한 현행법이라도 습격자에 대한 사법조사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이것은 배경이 사상적이라면 공안과의, 단순한 폭력이라면 형사과의 담당이다.

천황, 황족의 신변경호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부속기관인 황궁경찰본부 소속의 황궁호위관 중 호위전속의 시위관이 전속을 행한다. 단 경시청 경비부에도 경위과가 존재하지만, 주변경비를 행할 뿐 신변경호는 행하지 않는다. 경시청 경비부 경위과 및 각 경찰본부의 경찰관은 지방공무 등에서 황궁호위관의 후방지원을 행한다.

총리대신관저에는 경비를 전문으로 행하는 경찰관(총리대신관저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으나, 어디까지나 총리대신관저라는 시설의 경비를 행할 뿐 SP가 행하는 신변경호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SP의 내각총리대신담당 부서인 경호제1계와 총리대신관저경비대는 같은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 속해 있으며, 양자는 인사교류를 행하며 총리대신관저경비대로부터 SP로 선발되는 케이스이다.

국회의사당내에서는 위시(衛視)가 신변경호를 담당한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경찰에 경비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찰관은 의장의 허가가 없는 한 국회의사당내에 진입할 수 없다. 국회의사당내에 있는 SP는 의장의 허가를 받는다.

3) 자격, 기능¹⁶⁾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순사부장 이상의 경찰관으로 신장 173cm이상, 유도 또는 검도 3단이상, 권총사격 상급, 영어회화 가능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SP로서의 적성을 인정받은 경찰관 중

16) <http://sp-keigo.com>
<http://www.laqqo.net/keisatu/security.html>

에서 부서의 상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자로서 경찰학교 등의 시설에서 3개월간의 특수 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통해 엄격한 경쟁을 통과한 우수한 후보자 중에서 다시 선발된 자만이 SP에 임명된다.

IV. 한국의 대통령경호실 (PSS)

1. 대통령경호실의 역사

1) 제1, 2 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는 1948년 11월 내무부에 경무국을 두고 경무국장 예하에 경호부장과 경호경찰관을 두어 대통령 등 국가주요인사의 경호를 담당케 하였다. 1949년 2월 23일 대통령령 제59호인 ‘경찰서의 위치명칭 및 관할지역 변경에 관한 간’에 의거하여 경무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당시 종로경찰서 관할인 중앙청 및 경무대 구내를 경무대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이후 경무대 경찰서장이 경호책임자가 되어 주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제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성립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되면서 동년 6월 29일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지역의 경비업무는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동년 8월 13일 민주당 정부의 제2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경무대 경찰관 파견대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경호 및 대통령관저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이후 5·16 군사혁명은 경찰 경호를 마감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가 임시로 편성되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경호를 담당하였으며, 당시 청와대의 경비담당은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파견대가 맡았다. 1961년 6월 1일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경호대설치령을 제정하여 1961년 11월 18일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경호대를 흡수했다. 즉 행정과, 사전기획과, 경호과, 정보과, 기동경호과 등 5개 과 37명으로 편제된 경호대가 출범하였다. 이후 1962년 3월 24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됨에 따라 1962년 9월 29일 경호대를 경호실로 개칭하였다. 이로서 특별전문 경호기관이 정착되었다.

2) 제3공화국에서 현대까지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실법(법률 제1507호)이 제정되어 경호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2월 16일에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이 공포되고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실이 발족했다.

대통령경호실에는 경호실장을 두고 그 직속으로 인사관리·교육훈련·예산의 심사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차장과 경호·경비·수사 및 정보에 관한 업무와 행사계획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계획차장을 두도록 하였다.

1981년에는 대통령경호실법의 개정으로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 및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에 호위가 경호실 임무에 추가되었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대통령경호실법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하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독립되었다.¹⁷⁾

대통령령 제24931호 ‘대통령경호실과 그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524명에 이른다. 이는 정무직 2명(경호실장 및 경호실차장), 특정직 393명, 일반직 91명 등을 포함한다.

2. 대통령경호실의 조직

경호실의 조직은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본부, 안전본부로 편성되며 경호전문 교육기관을 위한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두고 있다.

- 기획관리실은 국회·예산 등 대외업무와 인사·조직·정원관리 업무, 총무와 재정 등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경호본부는 대통령 행사 수행 및 선발 경호활동, 방한하는 외국정상, 행정수반 등 요인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 경비본부는 청와대와 주변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를 총괄하며 청와대 내·외곽을 담당하는 군·경 경호부대를 지휘한다.
- 안전본부는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 행사장 안전대책 강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17) <http://www.ps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6002> (2014년 7월 15일 검색)

- 경호안전교육원은 경호안전관리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장비 개발,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을 담당한다.



〈그림 3〉 대통령경호실의 조직구조

* 출처: <http://www.ps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6007> (2014년 7월 15일 검색)

3. 대통령경호실의 운영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호실에는 차장 1명을 두며, 차장은 정무직·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¹⁸⁾

2013년 개정된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상 경호대상자들에 관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¹⁹⁾

18)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법률 제12044호, 2013.8.13. 일부개정) 제3조

19)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법률 제12044호, 2013.8.13. 일부개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참조

-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동법 15조에 따르면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²⁰⁾ 대통령 경호시 협력체계는 일률적이지는 못하나 대표적 참여기관으로 제2선과 제3선 경비·경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과 군, 정보부문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지역 관련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들 수 있다(민재기, 김계원, 2004).

20)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법률 제12044호, 2013.8.13. 일부개정) 제15조

V. 한·미·일 3국의 비교

〈표 2〉 한미일 국가원수 경호체제의 비교

	미국 Secret Service	일본 Security Police	한국 대통령경호실
창립년도	1865	1975	1963
근거법안	U.S Code18, Sec.3056 "Powers, authorities, and duties of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경찰법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 률
소속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	대통령 직속
수장	Director of the USSS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장	대통령경호실장
국가경호체제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찰주도형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법체제	영미법	대륙법	대륙법

이상 살펴본 한·미·일 경호기관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SS는 본래 위조지폐 적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수사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는 역사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요인경호(protection)와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의 보호라는 이원화된 임무(dual mission)를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경호기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한편 SS는 한국의 대통령경호실과 일본의 SP 설립의 모델이 되었는바, 세 기관은 조직과 운영에 유사점이 다수 존재하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둘째, 국가 경호체제를 경찰주도형 경호체제와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제로 구분하는 경우,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등이 경찰주도형에 속하며, 한국, 미국, 칠레, 이스라엘, 이집트 등이 특별경호조직 주도형에 속한다(허홍, 1998; 임준태,

21) 이는 세 기관의 영문 명칭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설립당시 한국 대통령경호실의 영문 명칭이었던 PSF(Presidential Secret Force) - 현재는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로 개칭됨 - 와 일본 시큐리티 폴리스(SP)는 모두 미국의 Secret Service(SS)를 참조하여 명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준태, 2009: 143; 권정훈, 2010:40-46))

2009). 한국의 대통령경호실과 미국의 SS는 대표적인 특별경호조직 주도형이며 일본의 SP는 대표적인 경찰주도형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계 각 선진국의 예를 살펴볼 때,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제 국가는 드물며²²⁾ 경찰주도형 경호체제 국가들이 대부분이라는 데서 한국과 미국의 경호체제의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선진 각국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국가원수 경호업무를 수도경찰 또는 국가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장기봉, 2001; 임준태, 2007).

셋째, 국가 경찰체제 및 경호체제는 영미법계 체제와 대륙법계 체제로 구분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영미법계 체제는 인권과 분권을 중시하며,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대륙법계 체제는 국가체제 유지와 능률성을 중시한다(민제기, 김계원, 2004: 130). 독일의 법률체계를 대륙받아들이고 일본과 일본의 법률체계를 받아들인 한국 역시 대륙법 체계에 속한다.

그러나 영미법 체계 국가인 미국이 같은 영미법 국가인 영국, 호주 등과 달리 중앙집권적인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제를 갖추고 있고, 대륙법 체계 국가인 일본이 자치적, 분권적인 경찰주도형 경호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같은 대륙법 국가인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영미법 국가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인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찰체제의 영미법/대륙법 이원적 구분은 반드시 각국 경호체제에 쉽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이것은 SS의 설립 유래, 한국에서의 군사정권 통치 및 SS를 모델로 한 대통령경호실의 설립 역사 등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적 위상으로 볼 때 한·미·일 3국의 경호기관은 각각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반면, 미국의 SS는 내각부처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기관이며, 일본의 SP는 수도경찰기관인 경시청 경비부에 속해 있다. 국가원수 경호기관이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예와 비교해 볼 때에도 매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임준태, 2007: 98).

다섯째, 세계 각국의 경호기관은 정치적 상황과 문화, 제도 및 역사에 따라 각자

22) 1901년까지 대통령 경호와 백악관 경비 업무는 Washington DC 경찰이 담당하다가 SS로 이관되었다. 한국의 경호체제 역시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주도형이었으며, 5·16 군사혁명 발발 후 특별경호조직 주도형으로 바뀌었다.

23) 미국의 경우 약간의 예외적 상황이나 SS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출발하였으며, 상당수 정복경찰관들이 경호경비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라던가, 특정한 영역의 범죄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연방경찰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임준태, 2007: 97)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미·일의 경호기관들의 경우에도 공히 비극적 암살사건 등을 거치며 발달해 왔다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미국 SS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한국의 대통령경호실, 일본의 SP의 순으로 그 정도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Lincoln 대통령에서 Kennedy 대통령까지 4명의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 암살사건이 있었던 미국에 비해, 1명의 대통령이 암살당한 한국과 국가원수 암살의 경험이 없는 일본 등 세 나라 사이의 역사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여섯째, 미국과 일본의 경호기관의 경우 그 경호대상자의 범위가 한국보다 넓다. 한국의 대통령경호실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 해외 국빈에 한정되는 반면, 미국 SS의 경우 부통령 및 대통령 후보, 일본 SP의 경우 삼부수장과 국무대신, 필요에 따라 도쿄 도지사와 외국 주일대사까지 포함한다. 미국과 일본의 예처럼 한국의 경호체제 역시 필요에 따라 법률상 경호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인다.²⁴⁾

일곱째, 경호기관 및 그 수장의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대통령경호실이 특히 강력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호부서 책임자가 차관보급, 일본의 경우 경무관급임에 비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그 수장은 장관 또는 차관급으로 보임되어 왔다. 과거 경호실은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여러 경호실장들, 특히 박정희 정권 하에서 박종규, 차지철 등의 인물들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는 특히 남북분단과 군사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예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예를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업무를 경찰청에 이관하여 경찰을 경호업무의 전담기구로 하는 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및 그 가족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통령 후보와 국무총리, 삼부수장 등 다른 중요 요인들의 경호 역시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호조직의 인사관리는 철저히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경호관련 법령의 통합화와 교육훈련의 확대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으로 '그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박준석, 정주성, 2010:242-244)

Ⅵ. 결 론

대통령, 국왕, 수상 등을 포함한 국가수반은 헌법상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인 위기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상황의 예측 변수로서는 탈세계화에 따른 테러리즘과 국제범죄의 광역화, 국제분쟁지역에 대한 자국의 개입에 따른 이념 간 충돌과 더불어 국내의 계층과 세대 및 이념에 따른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갈등현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수반은 국내외의 분쟁과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가 다양한 변인에 의해 노출되는 극한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빚어진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사건²⁵⁾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같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원수 경호조직인 미국의 SS는 본래 위조지폐 등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연방 수사기관으로 출발했다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아직까지도 국가원수 및 요인의 보호와 함께 금융범죄 수사 등 금융하부구조의 보호라는 이원화된 조직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암살 등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 기능이 발달하고 확대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이자 영미법 계열의 국가로서 선진국 중에서 세계적으로 예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계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SS는 일본의 SP와 우리나라의 대통령경호실 설립의 모델이 되었는데, 그 조직체계와 운영 등에서 여러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의 SP는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경찰주도형 경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별경호조직 주도형 경호체계를 갖춘 한국의 대통령경호실은 남북분단과 군사정권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발전해온 바, 그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이 특히 강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한·미·일의 국가원수 경호조직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법적 특성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발달해 왔으며 이질적이며 동질적인 특성을 동시에 내포한

25) 대표적인 사례로서 1952.6.25.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산 극장에서의 암살 미수; 1968.1.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1974.8.15. 육영수 여사 피살; 1983.10.9. 아웅산 원격폭파 전두환 대통령 암살미수 등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 직·간접적으로 국가간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조직을 비교 고찰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경호체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도출점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01). 경찰백서 2001. 서울: 경찰청
- 권정훈 (2010). 한국 테러 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5, 27-62.
- 김두현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43-67.
- 민제기, 김계원 (2004). 한국과 미국의 국가원수경호조직 비교연구. 경호경비연구, 8, 127-153.
- 박기주 (2010). 북한의 테러리즘 양상과 대응방안
- 박준석 (2000). 한국 대학의 경호관련 이론분야의 학문적 발전 방안. 한국인적교육학회보, 3(1), 137-151.
- 박준석, 정주섭 (2010). 경호학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 서상열 (2007).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대응체계 구축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235-259.
- 이만중 (2010). 테러리즘의 양상과 대응에 관한 고찰. 경찰학논총, 5(11), 459-484.
- 이상원, 임준태 (2005). 경찰경호시스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283-337.
- 임준태 (2007). 각국의 경호조직 및 교육제도의 시사점을 통한 경호경찰발전방안. 한국경찰 연구, 6(2), 69-108.
- 임준태 (2009). 비교경호제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장기봉 (2001). 21세기 國家警護機關 model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현, 이대성 (2011).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 해외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56-179.
- 정진환 (1991). 비교경찰제도. 서울: 백산출판사.
- 허홍 (1998). 要人警護에 관한 研究: 4개국 경호제도와 위해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mmett, D. (2014). *Within arm's length: A Secret Service Agent's definitive inside account of protecting the Presid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 Kessler, R. (2010). *In the President's Secret Service: Behind the scenes with Agents in the line of fire and the Presidents they protect*. New York: Crown Forum.
-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2014). *U.S. Secret Service 2013 annual repor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ja.wikipedia.org/wiki/セキュリティポリス> (2014년 7월 15일 검색)
http://r25.yahoo.co.jp/fushigi/rxr_detail/?id=20071025-90002848-r25 (2014년 7월 15일 검색)
<http://sp-keigo.com> (2014년 7월 15일 검색)
<http://www.laqoo.net/keisatu/security.html> (2014년 7월 15일 검색)
<http://www.pss.go.kr/site/main/index001> (2014년 7월 15일 검색)
<http://www.secretservice.gov> (2014년 7월 15일 검색)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Protective Security Units of Korea, the U.S., and Japan

Kwon, Hyuck-Bin

Today each country in the world goes beyond the narrow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that was limited to national defense and ideology and are entering multi-dimensional global system mainly based on economic profits. Nevertheless, conflicts between nations due to religious and ideological reasons have brought unprecedentedly intense disputes

Security services for head of states have been an important national mission in every era and society. However, they are becoming a main target for assassination and attacks by terrorists. Attacks on the head of state and other VIPs can cause aftermath ranging from war to conflict situation, political crisis, and economic los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insights by comparing protective security units of Korea, the U.S., and Japan which have different legal basis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South Korea, which faces difficult diplomatic stance due to the tension with North Korea and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polarization between classes, generations, regions, and ideologies, cohesion among members of society has weakened and hatred toward the head of state has been brought,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t of national security services.

Therefore the study of protective security units and its operation by comparis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will be able to bring insights on the promotion of the security service.

Key words : Security Service, Protective Security Unit,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Security Polic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